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6
----------	------

제출일자 : 2017. 6.

제출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가.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읍·면에 위임 소관부서를 현실의 규정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 나. 현행 위임사무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법규의 입법근거와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수임권자의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세무과의 읍·면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징수과 위임사무 추가
- 나. 복지업무의 위임 소관부서 조정
- 다. 위임사무 중 개정된 근거법령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4) 입법예고 : 2017. 5. 16. ~ 6. 6.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령
자치행정과	1	<p>사무직원중 별정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사항</p> <p>가. 임용권</p> <p>나. 호봉획정 및 승급</p> <p>다.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제91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지방공무원법 제76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같은법 제32조
	2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의 계획 및 허가 나. 당직명령 다. 출장승인 라. 겸직근무 마. 병 가 바. 공 가 사. 특별휴가 아. 겸직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27조
	2	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의 권한 가. 대부대상자 추천 나. 자금의 회수 다. 사업지도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3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
징수과	1	지방세징수법중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회계과	1	물품관리조례중 다음사항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 •같은조례 제17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령
복지정책과	1	기초연금법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나.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다. 미지급 연금의 청구 라. 수급권 자격관리 마. 이의신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법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제6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같은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1조 •같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매장·화장·개장의 신고 나. 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생활보장과	1	의료급여법중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상실·변경 요구 나.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다. 의료급여증의 자격확인·정정· 증회수등 라.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수합 제출 마.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상한금 신청서 수합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법 제3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3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다음의 권한 가. 수급자의 관리 나. 급여의 신청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희망지원과	1	장애인복지법중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인진단 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 다.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라. 장애수당등의 지급 신청 마. 장애인 복지카드의 교부 등 바. 장애등급의 조정 사. 장애상태의 확인 아. 등록증의 반환명령 자.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차.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자에 대한 배려 카. 장애인 보장구 신청서 수합 및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제28조 같은법시행규칙제46조
환경과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청소위생과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환경미화원 관리 나.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지도 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라. 생활쓰레기 불법 투방기 지도·단속 마.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지도·단속 바. 청소장비 관리 사.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아. 대형폐기물 처리 자. 생활쓰레기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차. 공중용 쓰레기용기 유지 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2	쓰레기 봉투의 공급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나. 쓰레기봉투 판매 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및 취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건설과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공사, 굴착, 건축 수반 허가 제외)	•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령
도시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가. 불법형질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안전방재과	1	소하천의 점사용허가 및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나.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공원녹지과	1	산림보호법 중 다음의 권한 가. 입산허가 나. 불놓기 허가 다.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보호법 제15조 •산림보호법 제34조 •산림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7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 행위 조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교통과	1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폐지신고 나. 기타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사항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 내지 110조
	2	노상방치 차량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노상방치차량 조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참고**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